

※ 이 상품요약서는 2026년 07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무	배	당	파	워	1	0	0	치	매	보	험			
(	갱	신	형	,	해	약	환	급	금	미	지	급	형	)
상		품		요		약		서						

이 상품요약서는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약관 등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최대 100세까지 갱신을 통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을 통해 치매진단, 표적 치매약물허가치료, 치매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치매 간병인사용 입원 등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치매상태”란 무엇인가요?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 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CDR척도”란 무엇인가요?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치매보장개시일”이란 무엇인가요?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갱신형 상품이란 무엇인가요?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기간이 5년만기 또는 10년만기인 상품입니다.

보험기간 만료 후에도 이 계약은 자동 갱신되며,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가 되는 계약해당일까지 갱신되어 유지되는 상품입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무엇인가요?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표준형” 상품은 보험기간 중에도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기간 중 해지(율)을 반영하지 않고 산출되었으며, 본 상품과 동일한 보장 내용의 비교·안내만을 위한 상품입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표준형” 상품과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예시)

[기준: 남자 5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무배당 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무배당 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구좌,

무배당 중증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무배당 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II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구좌,

무배당 특정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PET양성)보장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무배당 급여치매약물치료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구좌,

무배당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1구좌,

무배당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무배당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무배당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무배당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구좌]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원)

보험종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표준형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630	670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무엇인가요?

무배당 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710	760
무배당 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380	400
무배당 중증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00	700
무배당 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II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750	830
무배당 특정최경도치매 (아밀로이드PET양성)보장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2	16
무배당 급여치매약물치료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50	280
무배당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 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682	792
무배당 치매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370	430
무배당 중증치매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	26
무배당 치매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70	210
무배당 중증치매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	14
합계보험료	4,484	5,128

(2) 해약환급금 및 해약환급률 비교

(단위: 원)

보험종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표준형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납입보험료 누계액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1년	53,808	0	0.0%	61,536	19,122	31.0%
2년	107,616	0	0.0%	123,072	40,073	32.5%
3년	161,424	0	0.0%	184,608	55,835	30.2%
5년	269,040	0	0.0%	307,680	75,250	24.4%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무엇인가요?						
7년	376,656	0	0.0%	430,752	73,026	16.9%
10년	538,080	0	0.0%	615,360	0	0.0%

※ 상기 해약환급률은 납입보험료누계액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발생 전 기준입니다.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된 경우 상기 예시 금액은 변경되며, 계약자는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금 발생 전 기준입니다.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금이 발생된 경우 상기 예시 금액은 변경되며, 계약자는 무배당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금 발생 전 기준입니다.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금이 발생된 경우 상기 예시 금액은 변경되며, 계약자는 무배당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금 발생 전 기준입니다.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금이 발생된 경우 상기 예시 금액은 변경되며, 계약자는 무배당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금 발생 전 기준입니다.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금이 발생된 경우 상기 예시 금액은 변경되며, 계약자는 무배당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AIA 헬스케어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IA 헬스케어 서비스」는 건강관리, 치료지원, 질병관리교육, 가족지원 등 토탈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AIA 헬스케어 서비스 신청서(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AIA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A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으며,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	--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자격요건

1. 보험의 종류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의 세목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순수보장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최초계약	10년만기	전기납	50세~80세	월납
	5년만기	전기납	50세~80세	
갱신계약	10년만기	전기납	60세~90세	
	5년만기	전기납	55세~95세	
	4년만기	전기납	96세	
	3년만기	전기납	97세	
	2년만기	전기납	98세	
	1년만기	전기납	99세	

※ 다만, 피보험자에게 이 계약의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기간은 최대 종신으로 한다.

3. 가입한도

주계약의 가입한도(구좌 기준)는 보험가입금액 10만원(1구좌)~100만원(10구좌)입니다.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만원(1구좌)은 매월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10만원을 의미합니다.

4. 건강진단 여부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피보험자의 나이, 청약서 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 주계약: 무배당 과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 무배당 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
- + 무배당 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
- + 무배당 중증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
- + 무배당 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II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
- + 무배당 특정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PET양성)보장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
- + 무배당 급여치매약물치료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
- + 무배당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
- + 무배당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
- + 무배당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
- + 무배당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
- + 무배당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특약]
- + 무배당 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 (갱신형) (2형 일반심사형) [선택특약]
- + 무배당 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갱신형) (2형 일반심사형) [선택특약]
- + 무배당 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 (갱신형) (2형 일반심사형) [선택특약]
-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제도성특약]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제도성특약]

※ 특약의 경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 한도, 부가가능여부 등의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다음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계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0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동안 확정지급)	매월 10만원 (다만, 최대 종신까지 지급합니다)

-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 해당연도의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해당월에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라 함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날부터 만 3년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36개월분의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 보험수익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또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내에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CDR척도 3점 이상을 최초 진단받고, 90일이 지속되어 치매보장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수령 중 사망시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2) 무배당 경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경도이상치매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00만원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경도이상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이상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경도이상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 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이상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이상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CDR척도 1점 이상을 최초 진단받고, 90일이 지속되어 치매보장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경도이상치매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3) 무배당 중등도이상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중등도이상 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00만원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중등도이상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등도이상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 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등도이상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CDR척도 2점 이상을 최초 진단받고, 90일이 지속되어 치매보장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중등도이상치매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4) 무배당 중증치매진단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00만원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CDR척도 3점 이상을 최초 진단받고, 90일이 지속되어 치매보장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중증치매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5) 무배당 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II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3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치매입원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단, 간병인의 간병서비스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3천원
간병인사용 치매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제외)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요양병원 제외)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간병인사용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간병인사용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요양병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간병인사용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요양병원 제외)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 1일당 1만원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 간병인사용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사용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의 입원일수는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일수 1일로 계산합니다. 즉,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해당 일자는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치매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간병인사용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사용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치매입원급여금, 간병인사용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경우 지급일수는 각 입원급여금의 입원일수를 합하여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65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일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의 계산은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65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 상기 “치매”는 약관 “치매분류표”에서 정하는 치매를 말합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이 특약의 갱신 시 갱신 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6) 무배당 특정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PET양성)보장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특정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PET양성)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 “최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2. “아밀로이드베타 PET 양성”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최경도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최경도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최경도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 "아밀로이드베타 PET 양성"이란 “아밀로이드베타(Aβ)"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의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가 “20 센틸로이드(Centiloid)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경도이상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CDR척도 0.5점 이상을 최초 진단받고, 90일이 지속되어 치매보장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 “최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특정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PET양성)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7) 무배당 급여치매약물치료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급여 치매약물 치료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급여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았을 때 (다만,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0만원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상기 보험금은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하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연간”이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급여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8) 무배당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최경도치매, 경도알츠하이머치매)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20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표적치매약물 허가치료 급여금 (1회이상, 최초1회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도 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2.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1회이상 받은 경우	2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표적치매약물 허가치료 급여금 (7회이상, 최초1회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도 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2.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7회이상 받은 경우	10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5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표적치매약물 허가치료 급여금 (치료당, 36회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최대 36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도 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2.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1회당 5만원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최경도이상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경도이상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계

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최경도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최경도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 “경도 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 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경도 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란, “아밀로이드베타(Aβ)”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양전자방출 단층술(PET)검사의 경우, 그 결과가 “30 센틸로이드(Centiloid)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란,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도 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를 투약 또는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급여금(치료당, 36회한)을 받던 중 36회차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가 종료되기 전에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계약의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횟수를 포함하여 36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급여금(치료당, 36회한)을 받는 중에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36회 한도의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가 끝날때까지의 계속중인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에 대하여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급여금(치료당, 36회한)을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경도이상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CDR척도 0.5점 이상을 최초 진단받고, 90일이 지속되어 치매보장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 “최경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급여금(1회이상, 최초1회한),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급여금(7회이상, 최초1회한) 및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급여금(치료당, 36회한)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급여금(치료당, 36회한)의 경우 36회 한도의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급여금(치료당, 36회한)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 한합니다.

(9) 무배당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5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치매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고, “치매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5만원 (이용 1회당)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치매” 및 “장기요양상태 1~5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 발생 및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은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이 된 날을 말합니다.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은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한 달마다 도래하는 매월의 “치매 장기요양상태 판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치매 장기요양상태 판정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치매 장기요양상태 판정 해당일”로 합니다. 또한 “판정후 보험월”은 당월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부터 차월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개월 단위의 월을 말합니다.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부터 10년 이내에 치매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았을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을 판정받은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치매”는 약관 “치매분류표”에서 정하는 치매를 말합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10) 무배당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중증치매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고, “중증치매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50만원 (이용 1회당)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치매”, “중증치매 상태” 및 “장기요양상태 1~5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 “중증치매상태” 발생 및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은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이 된 날을 말합니다.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은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한 달마다 도래하는 매월의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판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판정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판정 해당일”로 합니다. 또한 “판정후 보험월”은 당월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부터 차월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개월 단위의 월을 말합니다.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부터 10년 이내에 중증치매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았을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을 판정받은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치매”는 약관 “치매분류표”에서 정하는 치매를 말합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11) 무배당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5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치매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고, “치매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5만원 (이용 1회당)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치매” 및 “장기요양상태 1~5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 발생 및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은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이 된 날을 말합니다.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은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한 달마다 도래하는 매월의 “치매 장기요양상태 판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치매 장기요양상태 판정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치매 장기요양상태 판정 해당일”로 합니다. 또한 “판정후 보험월”은 당월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부터 차월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개월 단위의 월을 말합니다.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부터 10년 이내에 치매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았을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을 판정받은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치매”는 약관 “치매분류표”에서 정하는 치매를 말합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12) 무배당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특약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중증치매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고, “중증치매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50만원 (이용 1회당)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치매”, “중증치매 상태” 및 “장기요양상태 1~5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 “중증치매상태” 발생 및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은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이 된 날을 말합니다.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은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한 달마다 도래하는 매월의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판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판정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판정 해당일”로 합니다. 또한 “판정후 보험월”은 당월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부터 차월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개월 단위의 월을 말합니다.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일” 부터 10년 이내에 중증치매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았을 경우에 회사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중증치매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을 판정받은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치매”는 약관 “치매분류표”에서 정하는 치매를 말합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장기요양상태 1~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13) 무배당 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 (갱신형) (2형 일반심사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뇌혈관질환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1년미만 5만원 계약일부터 1년이후 10만원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의 내용 중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14) 무배당 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갱신형) (2형 일반심사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0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1년미만 5만원 계약일부터 1년이후 10만원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의 내용 중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15) 무배당 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 (갱신형) (2형 일반심사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300만원(1구좌))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심뇌혈관질환 관혈수술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계약일부터 1년미만 150만원 계약일부터 1년이후 300만원

지급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심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급여 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 혈수술”을 받은 경우	계약일부터 1년미만 50만원 계약일부터 1년이후 100만원

-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의 내용 중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6)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특약면책조건을 부가하고, 특약 면책기간 중 약관에서 지정한 각호의 특정 신체부위 또는 특정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는 부담보 설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면책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책기간의 종료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포함)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17)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8)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전환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장애인의 범위)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3.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 후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2)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갱신시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4)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계약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합니다.
- (5)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장금액입니다.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보장금액의 삭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5년 또는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계약소멸 사유 발생시, 갱신 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8) 갱신되는 계약의 변경 내용 또는 갱신되는 계약의 보험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9) 이 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4.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1) 계약 전 알릴의무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3)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부지급 사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료 산출기초 및 적용이율

1.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2. 적용위험률에 관한 사항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중증 치매 발생률	
	남자	여자
50세	0.000011	0.000044
60세	0.000090	0.000242
70세	0.000705	0.001295

구분	중증 치매 유병자 사망률	
	남자	여자
50세	0.038015	0.025163
60세	0.051398	0.032862
70세	0.076762	0.047227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배당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며, 또 그 종류에는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이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

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우리 AIA생명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최초계약, 주계약 10구좌,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가입나이 50세, 단위: 원)

구 분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890	0	0.0%	7,500	0	0.0%
6개월	3,780	0	0.0%	15,000	0	0.0%
9개월	5,670	0	0.0%	22,500	0	0.0%
1년	7,560	0	0.0%	30,000	0	0.0%
2년	15,120	0	0.0%	60,000	0	0.0%
3년	22,680	0	0.0%	90,000	0	0.0%
4년	30,240	0	0.0%	120,000	0	0.0%
5년	37,800	0	0.0%	150,000	0	0.0%
7년	52,920	0	0.0%	210,000	0	0.0%
10년	75,600	0	0.0%	300,000	0	0.0%

-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상기 해약환급금은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 상기 해약환급금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발생 전 기준입니다.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된 경우 상기 예시 금액은 변경되며, 계약자는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 남자/여자, 50세)

상품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무배당 파워 100 치매보험 (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 형)	10년	10년	남자	142.4%	10구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매월 100만원 기준]
			여자	143.6%	